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51
----------	------

2021년 6월 1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5월 27일, 이석주 의원
2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3. 상정일자 :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○ 제3차 교육위원회(2021. 6. 18.) 상정·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석주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재난 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및 감액 조정 비율 확대 등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등과 관련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감경 범위 및 감액 조정 비율 확대

- 1)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 등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경 대상 범위를 확대(안 제28조)
- 2) 연간 사용료·대부료(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)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,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현행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으로 조정(안 제30조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

- 1)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·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로 분할납부 횟수 확대(안 제31조)

다. 기타 용어 정비 등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이석주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451호로 발의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 범위 및 감액 조정 비율 등의

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·보완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‘법 시행령’)의 개정 및 시행¹⁾에 맞춰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등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 제28조제1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이하 ‘법’) 제24조제2항²⁾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도록 한 경우와 법 제34조제2항³⁾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면율을 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안 제30조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감액비율을 종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전부를 감액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1) [시행 2021. 6. 23.] [대통령령 제31276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, 제17조제6항·제7항, 제29조제1항제28호, 제34조, 제35조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)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3)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- 그리고 안 제31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6개월(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) 또는 9개월(200만원 초과)의 기간안에 3회 또는 4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같은 동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과 청년친화강소기업⁴⁾을 지원하고자 법 시행령에서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경 및 범위, 분할납부 등을 개정⁵⁾함에 따른 것입니다.
- 따라서 이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방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기타 개정사항에 관한 검토

- 한편 동 개정조례안 안 제28조제2항제3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을 규정함에 있어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을 인용하고 있는바,

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해당 법규정의 내용이 제13조제9항⁶⁾에서 제13조⁷⁾로 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또한 안 제31조제3항은 재해를 재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
4) 임금·일생활균형·고용안정성·청년고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용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함

5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안내,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-2281(2021.4.5.)

6) 제13조(국유·공유재산의 임대) ①~⑧ (생략)

⑨ 삭제 <2020. 2. 4.>

7) 제13조의2(국유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) [본조신설 2020. 2. 4.]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는 재해를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- 이처럼 재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따른 결과로 정의되고 있으며, 동 조례 제31조제3항의 문맥상 천재지변과 같은 원인은 재난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, 재해를 재난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) 부칙에 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동 조례안 시행 전 사용·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6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안 부칙 제3조는 동 조례안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이와 같은 부칙의 경과 규정은 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⁸⁾, 제5조⁹⁾를 준용함에 따른 것으로, 입법의 체계적합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588, 2021.6.4.).

8) 부칙 <대통령령 제29324호, 2018. 12. 4.>

제2조(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9) 제5조(대부료 산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 중 “(대부료의 감면)” 을 “(대부료 등의 감면)” 로, 본문 제3호의 “제13조제9항” 을 “제13조의2제3항” 으로,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료 등” 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·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
2.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대부료 등의 100분의 50
3.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

제30조 중 “(대부료의 조정)” 을 “(대부료 등의 조정)” 으로, “연간대부료가 전년도 연간대부료” 를 “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(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)가 전년도” 로, “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” 를 “전부를 감액조정한다.” 로 한다.

제31조 중 “(대부료의 납기)” 를 “(대부료 등의 납기)” 로, 제2항제1호의 가·나를 삭제하고, 제3항의 “재해” 를 “재난으” 로, 제2항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대부료의 감면)</p> <p><신 설></p> <p>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3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: 대부료의 100분의 30 	<p>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</p> <p>①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료 등”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·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2.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.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제13조의2 제3항 ----- ----- ---

제30조(대부료의 조정)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,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을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

제31조(대부료의 납기)

① (생략)

② (생략)

1.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가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
나. 200만원 초과 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

2. (생략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30조(대부료 등의 조정) -----
-----연간 대부료 또는
사용료(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
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
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
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)가 전년도--

----- 전부를
감액조정한다.

제31조(대부료 등의 납기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

가. ~ 나. (삭제)

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재난으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